

영등포구의회  
제1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0. 12.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3호로 201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개정(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경제 환경에 맞추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어려운 서민경제 회복과 영등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

##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문 수정(안 제1조~안 제2조의2, 안 제4조, 안 제9조)
- 나. 소상공인, 지식산업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제2호, 안 제2조의2제8호~9호)
- 다. 기금의 용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조문 신설(안 제7조 제2항)
- 라. 지원된 용자금 회수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수정 및 신설(안 제2조의2제4호~제2조의2제5호, 안 제2조의2 제7호~안 제2조의2제9호)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융자금의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과 근거 법령 조항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비 등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임
- 주요 제정내용은
  - 각 조문에 중소기업 외 소상공인을 추가(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2제3호, 안 제2조의2제5호가목, 안 제4조제1항제1호~안 제4조제1항제3호, 안 제4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 소상공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신설(안 제2조의2제2호, 안 제2조의2제8호~안 제2조의2제9호)
  - 관련 법령 조문, 직위명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안 제1조, 안 제2조의2제4호, 안 제2조의2제6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제3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에서 위원 중 선출하도록 변경(안 제6조제2항)

- 기금 용자대상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신설(안 제7조제2항)
- 지원받은 대상에 대한 대출 및 용자기금에 대한 관리 방안 강화 규정 신설(안 제9조제2항제1호~제3호)
- 종합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 기금 지원범위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이번에 상정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지원내용이 나누어져 있어 실시 초기에 다소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금의 용자 등 직접적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점포(SSM)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조정제 실시,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와 같은 제도적·환경적 간접 지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사업조정제도 :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당해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중소기업청 자료 인용)

- 자금지원 :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자금, 폐업전업 지원자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가장 창업자금, 여성가족부의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미등록사업자 특별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경영안정자금 및 시중은행협력자금,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자금, 희망드림뱅크, 노동부의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자금 등
- 교육지원 : 소상공인진흥원의 경영개선교육, 성공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소상공인 e-러닝 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 및 경영전반에 대한 교육훈련, 시장경영진흥원의 상인대학, 유통 관련 위탁교육, 정보화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노동부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교육, 영세 자영업자 훈련 등
- 창업상담, 컨설팅 등 정보제공 :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정보시스템 및 자영업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상권분석 및 자료제공,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본무료컨설팅 지원, 현장 방문 상담 및 지도, 시장경영진흥원의 시장경영혁신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영업장소전대 지원 등
- 조직화, 협업화 지원 : 소상공인진흥원의 소규모 점포 조직화 지원사업, 프랜차이즈, 조합형 체인 활성화 지원 등

# 관 계 법 령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써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9.10>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개정 2009.3.25, 2009.11.19〉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 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별표 1] (제3조제1호 관련)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